

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서경기



여수시 조례 제2074호

붙임 여수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를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주택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빈집정비사업”을 “빈집정비 및 활용”으로, “조성하고”를 “조성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빈집정비사업”을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으로,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자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과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빈집정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 공간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 설치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3. 빈집의 철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를 “지원”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입주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8조(빈집 활용) ① 시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안에 방치된 <u>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빈집”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p> <p>2. (생략)</p> <p><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u> - <u>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u>에 -----.</p> <p>제2조(정의) ----- -----.</p> <p>1. -----이란 「<u>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u>농어촌정비법</u>」 제2조제12호에 따라 -----.</p> <p>2. (현행과 같음)</p> <p>3. “<u>빈집활용</u>”이란 빈집을 주택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제3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과 추진상황
2. 빈집 실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빈집정비 및 활용-----
----- 조성하고, -----
-----.

② ----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 노력하여야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

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신 설>

<신 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 정비의 시급성, 우선 순위, 각종 계획과의 상호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 설>

제6조(빈집정비사업 시행) ①·
② (생략)

<신 설>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과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사업 시행)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빈집정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 공간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 설치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대수선하거나 리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빈 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신설>

모델링

3. 빈집의 철거

제7조(사업비 지원) ① -----

----- 지원-----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빈집 활용) ① 시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 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8조(지도·감독)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게스트하우스, 쉼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입주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